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3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최은석의원안, 박민규의원안)	4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03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16.
- (3) 회 부 일 : 2025. 9.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익금불산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해 배당 성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현행 제도에 따른 3단계 익금불산입률은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간 20%의 차이가 있는 반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와 20%미만인 경우 간에는 50%의 차이가 존재하여 구간 간 급진적인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로 인한 과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발생시켜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낮은 익금불산입률에 더하여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주

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낮은 익금불산입 비율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

더욱이 현행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지분율 요건(10%이상)만 충족하더라도 95%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를 한 민간기업들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를 통해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활용되도록 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함(안 제18조의2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 완화(최은석의원안, 박민규의원안)

현행	개정안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	□ 출자비율 10% 이상 20% 미만 구간 익금불산입률 상향																								
<table><tr><th>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th><th>익금불산입률</th></tr><tr><td>50%이상</td><td>100%</td></tr><tr><td>20%이상 50%미만</td><td>80%</td></tr><tr><td>20%미만</td><td><u>30%</u></td></tr></table>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20%이상 50%미만	80%	20%미만	<u>30%</u>	<table><tr><th rowspan="2">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th><th colspan="2">익금불산입률</th></tr><tr><th>최은석 의원안</th><th>박민규 의원안</th></tr><tr><td>50%이상</td><td>100%</td><td>100%</td></tr><tr><td>20%이상 50%미만</td><td>80%</td><td rowspan="2"><u>80%</u></td></tr><tr><td><u>10%이상 20%미만</u></td><td><u>50%</u></td></tr><tr><td>10%미만</td><td>30%</td><td>30%</td></tr></table>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최은석 의원안	박민규 의원안	50%이상	100%	100%	20%이상 50%미만	80%	<u>80%</u>	<u>10%이상 20%미만</u>	<u>50%</u>	10%미만	30%	30%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100%																								
20%이상 50%미만	80%																								
20%미만	<u>30%</u>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최은석 의원안	박민규 의원안																							
50%이상	100%	100%																							
20%이상 50%미만	80%	<u>80%</u>																							
<u>10%이상 20%미만</u>	<u>50%</u>																								
10%미만	30%	30%																							

* 최은석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31), 박민규의원안 2025. 9. 17. 발의(의안번호 13048)

□ 개정안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최은석의원안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려는 것이고, 박민규의원안은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안별 익금불산입률 비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현행	최은석의원안	박민규의원안
50% 이상	100%	100%	100%
20% 이상 50% 미만	80%	80%	80%
10% 이상 20% 미만	30%	50%	
10% 미만		30%	30%

□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후 배당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주주 단계에서 재차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¹⁾ 제도로서, 법인주주가 받은 수입배당금²⁾의 일정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현행 제도는 출자비율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분율이 높은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간 동일성의 정도가 높으므로 이중과세 조정의 당위성도 커진다는 원칙에 따른 것임.

기존에는 일반규정인 내국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舊 「법인세법」 제18조의2)와 특례규정인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 제도(舊 「법인세법」 제18조의3)로 나누어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자회사의 상장여부에 따라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음.³⁾

1) 법인이 얻은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세후소득이 배당된 후 다시 주주에게 과세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에 대하여 독립과세론과 통합과세론의 견해 대립이 있음. 현행 세법은 통합과세론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고 있음.

2)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 포함됨.

이후 2022년 세법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하고 조세형평에 부합하도록 기업형태에 따른

3) 舊 「법인세법」[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구분을 삭제하였으며 일률적으로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

[개정 전·후 상장 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비교]

2022년 세법개정 이전			현행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주회사 (제18조의3)	40% 이상	100%	지주회사, 일반회사 동일 (제18조의3)	50% 이상	100%
	30% 이상	90%			
	40% 미만			80%	
	30% 미만	20% 이상 50% 미만			80%
일반회사 (제18조의2)	100%			100%	
	30% 이상	50%			
	100% 미만				
	30% 미만	30%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부칙에 포함되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5년 3월 세법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의 종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였음.⁵⁾

4) 「구(舊)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5)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료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배당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찬성 논리가 제시될 수 있음.

첫째, 세계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외국의 입법례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⁶⁾

우리나라는 타인자본을 이용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지급이자 차감이 이루어진다는 점⁷⁾을 감안할 때, 해외 주요국 대비 익금불산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르고,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6) 이종교·황남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세법학회, p.260.

7)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3제1항제2호

[주요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비교]

구 분	익금불산입 요건	익금불산입률	지급이자 차감
미국	요건 없음	· 관계법인(80% 이상): 100% · 지분율 20% ~ 80%: 65% · 지분율 20% 미만: 50%	차감규정 없음
일본	요건 없음	· 지분율 1/3 ~ 100%: 100% · 지분율 5% ~ 1/3: 50% · 지분율 5% 미만: 20%	지분율 1/3 초과 100% 미만인 모자회 사에만 차감
독일	10% 보유	· 지분율 10% 이상: 95%	차감규정 없음
프랑스	5% 보유	· 지분율 5% 이상: 95%	차감규정 없음
우리 나라	지주회사 ¹⁾²⁾ : 상장 30% 비상장 50% 일반법인: 없음	· 지분율 50% 이상: 100% · 지분율 20% ~ 50%: 80% · 지분율 20% 미만: 30%	차감규정 적용 (비율적 안분방식)

1) 세법상의 익금불산입 요건은 아니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2022년 이후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비율이며,
2022년 이전 설립된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보유율은 상장 20%, 비상장 40%가 유지됨.

자료: 이종교·황남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세법학회, p.261.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 p. 272~274

둘째, 최은석의원안은 현행 3단계 구간을 4단계 구간으로 완화하여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분율이 19%이면 익금불산입률이 30%인 반면, 지분율이 20%부터 49%까지이면 익금불산입률이 80%로, 지분율 차이가 1%에 불과한데도 익금불산입률 차이가 50%가 나기 때문에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임.

셋째,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 2월 지주회사의 종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현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로, 출자비율에 따른 비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에 따른 구간별 적정 익금불산입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였음.

참고로 제22대 국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당시 구간 간 급진적인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로 인한 과도한 문턱효과 등을 이유로 구간의 비례성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⁸⁾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 3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8) 제22대 국회 제42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 (2025. 2. 11.)

○ 김영환 의원: 첫 번째,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국내 자회사요. 일단 저는 현행도 이 구간 자체가 형평성·비례성이 안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는데, 그때 내국법인 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했는데 이거를 3년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요건 맞추기 위해서 했던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기재부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제에 비례성·형평성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익금 불산입을, 왜냐하면 50%만 하더라도 100% 다 익금 불산입을 시켜 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자본투자 대비 배당에 대해서 비례성이 확보가 안 되고, 구간이 3개 구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20% 획득했을 때하고 19% 획득했을 때하고 한 50% 차이 나거든요, 구간 형평성이? 차제에 구간의 비례성 조정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 이전에 설립·전환한 종전 지주회사⁹⁾의 입장에서는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거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낮아져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온 점, 지주회사에게 지분 확대를 위해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총 4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당초 정부는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부터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¹⁰⁾ 국회 논의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의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보유율인 20%로 요건을 완화하였음.

9) 202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12.30. 전 설립·전환한 종전지주(자)회사는 당시 지배하던 종전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20%·비상장 40%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2021.12.30. 이후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회사 및 종전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상장 30%·비상장 50% 이상이어야 함.

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7165

[지주회사의 지분율에 따른 개정 전·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비교]

지분율	개정 전(A)	현행(B)	B-A
50% 이상	100%	100%	-
40% 이상 50% 미만	100%	80%	△20%
30% 이상 40% 미만	90%	80%	△10%
20%이상 30% 미만	80%	80%	-
20% 미만	80%	30%	△50%

주) 자회사는 상장법인을 가정함

둘째, 일반회사의 경우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조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사의 지분율에 따른 개정 전·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비교]

지분율	개정 전(A)	현행(B)	B-A
100%	100%	100%	-
50% 이상 100% 미만	50%	100%	+50%
30% 이상 50% 미만	50%	80%	+30%
20% 이상 30% 미만	30%	80%	+50%
20% 미만	30%	30%	-

주) 자회사는 상장법인을 가정함

셋째, 개정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분율 요건(10%이상)만 충족하더라도 95%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¹¹⁾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을 불리하

11)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식 및 범위는 입법정책적 판단사항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지만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 50%~10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일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됨.

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비교]

구 분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우리나라	· 지분율 50% 이상: 100% · 지분율 20% ~ 50%: 80% · 지분율 20% 미만: 30%	· 지분율 10% 이상: 95%
미국	· 관계법인(80% 이상): 100% · 지분율 20% ~ 80%: 65% · 지분율 20% 미만: 50%	· 지분율 10% 이상: 100%
일본	· 지분율 1/3 ~ 100%: 100% · 지분율 5% ~ 1/3: 50% · 지분율 5% 미만: 20%	· 지분율 25% 이상: 95%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문 의 처

02)6788-5154